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1-1]

甲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B를 승용차로 치어 B가 중상해를 입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 甲은 사고 신고를 밟고 긴급출동한 경찰관 P에 의해 사고현장에서 체포되었고, B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트럭과 부딪혀 전복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15점)**

**I. 논점의 정리**

甲이 혈중알콜농도 0.25%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죄(동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가 성립함은 문제가 없고,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부를 검토한다.

**II.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동법 제5조의11)의 성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능력, 운동능력, 판단력이 저하되어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안에서 사고 당시 甲은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상태로 인하여 전방 주시능력이 저하되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III. 특가법위반의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부**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개입한 사정에 대해 통상 예견할 수 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의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사안에서 甲의 위험운전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개입한 사정인 후송 구급차가 신호위반 트럭과 충돌하여 전복되는 사고는 경험칙상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甲의 위험운전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위험운전치사죄가 아닌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

**IV. 사안의 해결**

甲은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 4 제1장 고의의 작위 · 기수법

##### [사례 2]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

[1-2]

乙이 A에게 다가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뺏는 과정에서 등산용 칼을 들이대자 A가 황급히 도망가다가 바로 옆 도로를 건너던 중 갑자기 뛰어든 A를 미처 보지 못한 T가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A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A의 장파열을 치료하던 의사가 수술을 지연하여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乙의 죄책을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15점)

### I. 논점의 정리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여부에 따라 乙의 특수강도치사죄 또는 특수강도치상죄의 성부가 결정된다.

### II. 인과관계 판단

#### 1. 견해의 대립

① '일정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관계에 있는 조건은 모두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조건설, ② 사회생활상의 일상적인 경험법칙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만이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상당인과관계설, ③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합법칙적 조건설 등이 있다.

#### 2. 판례의 입장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른다.

#### 3. 사안의 검토

사안은 강학상 '비유형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① 조건설에 따르면 乙의 특수강도행위가 없었더라면 A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乙의 특수강도행위와 A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판례의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면 乙의 특수강도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개입한 다른 사실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乙의 특수강도행위와 A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사안에서 乙의 특수강도행위와 이들 외계변화가 합법칙적으로, 즉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에 적합하게 결합되어 A 사망의 결과로 실현되었다고 평가되므로 乙의 특수강도행위와 A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안은 乙의 특수강도행위와 A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규범적 관점에서 객관적 귀속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III. 객관적 귀속 판단

#### 1. 객관적 귀속의 척도

결과에 대해 인과적인 행위가 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창출했고(위험창출), ②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회피(또는 지배)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결과발생으로 사실상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위험실현), ③ 그 실현된 위험회피가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 범위 내에 있는 것일 때(규범의 보호목적)에 그 결과는 행위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특히 '위험실현'과의 관계에서 비유형적인 인과관계 사례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험칙상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지나치게 비유형적인 인과의 진행이어서 객관적으로 예견가능성이 없는 우연적 결과가 아닌 한 위험실현으로 평가되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지 않는다.

#### 2.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경우乙이 ① 특수강도행위를 통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였고, ②乙의 특수강도행위와 A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A의 옆 도로로 도망, 옆 도로 운전자 차량에 충격에 의한 장파열, 후송 병원 의사의 수술지연에 의한 복막염 발생' 등의 사정이 개입하였지만, 이들 사정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가능한 인과의 진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험실현이 인정된다.  
③ 나아가 A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乙이 위반한 특수강도치사죄의 보호목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규범의 보호목적도 충족된다. 따라서 A의 사망의 결과는乙의 특수강도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되므로乙은 특수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 IV. 사안의 해결

乙은 특수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기수범을 인정하는바, 사안에서乙의 특수강도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강도치사죄의 기수범의 죄책을 진다.

## [사례 91] 법전협 2018(3)모의(제2문)

[26-2]

폭력배 甲은 친구 A의 출장을 틈타 A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밤 11시 경 A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A의 신용카드 1장을 훔치고, 정원에서 평소 눈독을 들였던 높이 2m, 폭 1m 상당의 정원수 한 그루를 쌌다. 그러나 그 나무가 너무 무거워 운반하기 어렵게 되자 친구 乙에게 전화하여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트럭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乙은 공모한대로 A의 집에 들어가 甲과 함께 나무를 트럭으로 옮겨싣고 나왔다. 다음 날 甲은 양복점에서 A의 신용카드로 양복 1벌을 구입하였고, A의 정원수도 위 사정을 모르는 조경업자에게 1천만 원에 판매했다.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35점)**

**I. 논점의 정리**

甲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乙의 공동주거침입죄, 합동특수절도죄 내지 장물운반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II. 신용카드 취득 · 사용에 대한 甲의 죄책****1. 신용카드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의 성부**

본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甲이 밤 11시 경 A의 집에 들어가 A의 신용카드를 훔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로 양복구입한 행위에 대한 죄책****(1) 양복에 대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의 성부**

甲이 절취한 A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장하며 결제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양복을 구입한 경우 구입한 양복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동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성부**

甲이 A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가맹점에 제시하여 양복을 구입한 것은 절취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III. 정원수 취득 · 판매에 대한 甲과 乙의 죄책****1. 甲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乙의 장물운반죄(형법 제362조 제1항)의 성부****(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시기**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때에 기수가 된다. 여기서 점유취득이란 재물에 대하여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사실상의 지배를 갖는 것을 말하는바, 판례는 입목절도의 경우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한다.

## (2) 사안의 검토

판례에 의하면 甲이 단독으로 정원수를 캐내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乙이 가담하여 그 정원수를 운반하였으므로 甲과 乙은 협동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고, 甲은 정원수에 대한 야간주거 침입절도죄의, 乙은 甲이 절도죄를 통하여 영득한 정원수를 운반한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 2. 甲과 乙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동법 제2조 제2항)의 성부

본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다라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甲이 먼저 A의 주거에 침입한 후 나중에 甲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乙이 甲과 공모한대로 A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甲과 乙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거침입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과 乙은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책을 진다.

## 3. 정원수 판매에 대한 甲의 사기죄(제347조 제1항)의 성부

甲이 도품인 정원수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조경업자에게 도품임을 숨기고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① 도품인 정을 묵비한 것은 묵시적 기망(견해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②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조경업자로부터, 도품인 정을 알았더라면 지급하지 않았을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③ 도품은 2년간 선의취득이 제한되므로 조경업자는 정원수의 소유권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조경업자에게 매수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이다.

## 4. 소결

甲은 정원수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공동주거침입죄는 흡수) 및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지고, 乙은 공동주거침입죄와 장물운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 IV. 사안의 해결

甲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포괄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지고, 乙은 공동주거침입죄, 장물운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 [사례 92] 법전협 2016(3)모의(제2문)

[26-3]

A회사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는 甲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사의 책상서랍에 보관 중인 A회사 명의의 K은행 예금통장과 직인을 몰래 가지고 나와 K은행으로 가서 A회사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K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K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예금통장과 직인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A회사가 개발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설계도면을 빼내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마음먹고 22:00경 허가받은 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된 A회사 기획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A2용지 2장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왔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특별법위반의 점은 논외로 함). (20점)

## I. 논점의 정리

통장 및 직인에 대한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인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성부, 설계도면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성부를 검토한다.

## II. 1,000만 원 송금행위에 대한 죄책

## 1. 예금통장 및 직인에 대한 절도죄(제329조)의 성부

판례는 “예금통장은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이므로,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사안처럼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이를 반환한 경우,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여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회사의 직인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2. 송금행위에 대한 죄책

## (1) 사문서위조죄(제231조) 및 동행사죄(제234조), 사인부정사용죄(제239조)의 성부

예금청구서는 사문서이고, 甲이 작성권한 없이 A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것은 권한 없이 타인의 작성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위조한 A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B은행 창구직원에게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甲이 A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A회사의 직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인부정사용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사례 187] 법전협 2016(2)모의(제2문)

[37-5]

경찰이 甲, 乙, 丙의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甲은 丙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모든 범행을 丙이 혼자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후 도피하였고, 丙은 얼마 후 사법경찰관 P를 찾아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밀하면서 자수하고 곧바로 체포되었다. 丙은 구속재판을 받던 중 甲이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음은 물론 연락도 하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乙을 통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통하여 구속 중인 丙에게 1주일 내로 5천만원을 주겠으니 비밀을 유지하도록 당부하였으나, 甲이 1주일이 지나도록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丙은 법정에서 그 동안의 범죄사실을 모두 진술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 I. 논점의 정리

丙의 범인도피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갈미수죄 성부, 甲의 범인도피교사죄 성부, 乙의 범인도피방조죄 성부가 문제된다.

## II. 丙의 죄책

## 1. 범인도피죄(제151조 제1항)의 성부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동정범 중의 1인이 타 공동정범을 도피시킨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사안에서 丙이 공동정범인 甲 및 乙의 존재를 숨기고 단독범행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甲 및 乙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평가되므로, 丙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진다.

##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의 성부

판례에 의하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丙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인임을 자처하면서 계속 수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3. 공갈미수죄(제350조 및 제352조)의 성부

丙이 甲으로부터 약속한 보상금을 받을 의도로 乙을 통해 범죄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것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 352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III. 甲의 범인도피교사죄(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 성부

자기 도피를 교사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에 대해 학설은 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한 것은 비호권의 일탈이며, 공범종속성설의 논리상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적극설, ② 자기도피 교사도 자기비호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고 정범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甲이 丙에게 금전적 보상까지 약속하면서 丙으로 하여금 단독범행임을 허위로 자백하게 한 것은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방어권남용에 해당하므로,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IV. 乙의 죄책

#### 1. 범인도피방조죄(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의 성부

판례는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전제에서, 범인을 은폐하는 피고인의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정범에게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범인도피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乙은 계속범인 丙의 범인도피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도피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1주일 내로 5천만 원을 주겠으니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甲의 당부를 丙에게 전달함으로써 丙으로 하여금 1주일 동안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乙의 행위는 정범인 丙에게 범행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하여 범인도피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 2. 공갈미수방조죄(제350조 및 제352조, 제32조 제1항)의 성부

丙은 약속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甲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정을 알고 있는 乙이 丙의 의사(해악의 고지)를 甲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것인바, 乙은 공갈미수방조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겠다(제350조 및 제352조, 제32조 제1항).

### V. 사안의 해결

甲은 범인도피교사죄의, 乙은 범인도피방조죄와 공갈미수방조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丙은 범인도피죄와 공갈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사례 188] 법전협 2024(3)모의(제2문)**

[38-1]

(甲이 X회사를 설립하여 1인 주주의 대표이사가 된 후, 아들 乙을 회사 팀장으로 고용하여 완제품을 X회사 소유의 트럭에싣고 거래처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겼는데, 乙이 개인적인 급전이 필요하여 위 트럭을 丙에게 담보로 맡기면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500만 원을 빌렸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乙로부터 들어 알게 된 甲은 회사에서 보관하던 키를 가지고 丙이 집 앞 골목길에 세워둔 트럭을 회사 차고로 가지고 온 사실과 관련하여 甲과 乙은 각각의 범죄로 기소되어 동일한 법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심리를 받게 되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乙이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트럭을 맡긴 사실은 없고, 단지 乙이 트럭을 丙의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해두었다는 얘기만 듣고 트럭을 몰고 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법원은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乙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데,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트럭을 맡긴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트럭을 맡겼다는 사실을 甲에게 말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1. 甲의 공판정 진술과 관련한 죄책은? (8점)
2. 乙의 증언내용이 아버지 甲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乙의 죄책은? (12점)

**[문 1]****I. 논점의 정리**

甲의 위증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II. 위증죄(제152조 제1항)의 성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며 자수범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로서의 허위진술일 뿐이고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甲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증죄는 성립할 수 없다.

**III. 위계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의 성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책무는 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IV. 사안의 해결**

甲은 아무런 죄책을 지지 않는다.